

바

성폭력

Vol. 9
2015 상반기

1

5 기획특집 [생존자와 쉼터운동]

- 6 여는글
- 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주의 쉼터의 역할과 과제
- 12 여성주의적 공간과 쉼터, 의미찾기

2

19 쟁점과 입장

- 20 보이지 않는 전쟁 : 섹슈얼한 것과 군 조직문화
- 25 특별법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까
- 29 공연음란죄와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 반대행동

36 프리즘 [2014년 여성폭력 관련 법 평가와 과제]

- 36 여는글
- 37 성폭력피해자보호법 및 자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 41 성매매방지법 10년,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

46 성문화 읽기

- 46 드라마 <아내의 자격>을 통해본 한국의 모성, 가부장성과 계급의식
- 52 안전한 축제를 질문하기

56 생존자 말하기

- 56 서로가 서로여서 주고받은 따뜻함이 꿈같은 시간

3

63 성폭력과 사람들

- 64 열림터에서 생활하게 될 성폭력생존자에게 보내는 편지

67 사례연구

- 67 성폭력피해자와 대리인 상담

4

74 권말코너

- 76 아낌없이 주는 나무



1

기획특집 [생존자와 쉼터운동]

어는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주의 쉼터의 역할과 과제
여성주의적 공간과 쉼터, 의미찾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주의쉼터의 역할과 과제

문숙영 |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前 원장

{ 생존자와 쉼터운동

본 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가 개소한지 2014년으로 20년이 되었다. 한국사회 최초로 개소한 성폭력생존자보호시설인 열림터는 그간 총 365명의 생존자가 생활, 자립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상담, 법률, 의료, 학업,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성폭력생존자가 자립하고 성장하는데 노력해왔던 열림터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호 기획특집에서는 생존자와 쉼터운동이라는 주제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또한 성폭력피해경험과 쉼터라는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해본다.

성폭력피해자 쉼터인 열림터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쉼터운동을 전개해왔다. 수많은 성폭력생존자들이 거쳐 간 열림터의 지난 20년은 모험과 도전의 시간이었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던 피해생존자들이 열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여정은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이 1994년 시행된 이후로 성폭력생존자를 둘러싼 지원정책과 제도는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비해서 심리상담과 법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되었고 무엇보다 부족했던 쉼터가 증가하면서 성폭력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쉼터운동의 시발점이 된 열림터 활동을 지속해오면서 여전히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존재한다.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잃어가는 현실

들고나는 것이 일상인 열림터에는 다양한 연령의 피해자들이 입소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가해자와 시급하게 분리가 필요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히 10대 피해자들이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다가 열림터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쉼터에 입소하면서 학생이 학교를 가는 당연한 일상이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피해를 입은 학생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지인들이 피해자의 학교를 이미 알고 있거나 모른다해도 알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가해자와 지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와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피해자라는 소문이 나면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인해 학교를 다니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이유로 쉼터에 들어온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전학을 한다. 피해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들은 성폭력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성폭력피해와 쉼터 입소로 삶이 바뀐 피해자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중요하다. 또래 친구들과처럼 학교 공부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신속히 전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학생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는 게 쉽지 않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성폭력쉼터에 입소한 학생의 전학은 피해자가 살던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할 수 있는 비밀전학으로 이뤄진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것은 가해자인 친족으로부터 주소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초,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하는 절차를 거쳐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과거 전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

교)에 다니던 피해자가 동일 또는 유사 계열의 학교로 전학할 때는 오로지 학교장이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9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허가 여부를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해당 학교장이 전학을 거부하면 전학할 방법이 없다.

의무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초, 중등,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의 전학을 허가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찾기도 매우 어렵다. 학생정원이 다 차서, 성폭력피해 학생의 학교적응이 어려울 것이라서, 거주지를 옮기고 학교를 찾느라 늘어난 결석일수에 난색을 표하며 전학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녔던 열림터 생활인들 중 일부는 이런 이유로 결국 전학하지 못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며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쉼터가 증가했음에도 전학 문제는 전국의 쉼터에서 반복해서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가진 생존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또 다른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대안 공간의 모색

20년간 성폭력생존자들과 동고동락한 열림터에도 쉼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소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 성폭력쉼터, 그 중에서 여성주의 쉼터를 표방하는 열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배워 온 것과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접하게 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위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하기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 적응하기 힘들어 퇴소를 결정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정

신분열증, 망상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피해자의 경우에 함께 사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는 불가피하게 퇴소를 결정하기도 한다.

모든 성폭력생존자가 쉼터 운영지원체계에 똑같이 적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개개인의 성폭력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성폭력피해자 지원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생계비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2014년 기준 쉼터에 사는 피해자는 매월 약 23만원, 하루 약 7,5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하루 한끼 식사비용에 달하는 생계비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2014년부터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일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쉼터의 실제 생활과 지원정책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열린터가 개소한 1990년대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이라면 누구나 입소 가능한 일반 쉼터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장애인 쉼터가 전부였다. 이후 아동성폭력과 친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1년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쉼터가 문을 열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성폭력 쉼터에서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개소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30개의 쉼터(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장애인자립지원)가 운영 중이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부족한 성폭력쉼터를 확충하

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새롭게 개소하는 쉼터의 대부분이 장애인쉼터와 특별지원쉼터(친족성폭력쉼터)인 것은 우려스럽다. 퇴소 후 자립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쉼터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쉼터를 제외한 개소 쉼터가 특별지원쉼터로 유형이 치우치면서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갈 곳이 부족한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특별지원쉼터에 정부의 집중지원이 이뤄지면서 일반 쉼터에서 사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원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소속 21개 기관을 조사한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쉼터 유형과 상관없이 쉼터에 살고 있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비율이 입소현원 대비 68%로 나타났다. 특별지원쉼터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친족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성폭력쉼터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채 쉼터의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의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과 쉼터에 관계없이 어떤 곳에 입소하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건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정책 마련과 대안이 필요하다.

성폭력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다. 성폭력 쉼터에서 사는 성폭력생존자들도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성폭력 쉼터가 단순히 생존자의 의식주를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생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취약하고 무기력한 성폭력 피해자상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를 가진 생존자로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쉼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여성주의적 공간과 쉼터, 의미찾기

김고연주 | 여성학자

가족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여성주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기반으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는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공간에 부착된 젠더의 이분법도 공고하다(필자는 ‘사적 공간은 부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는 관습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여성이 공적 공간으로 진입하긴 했지만 여성의 ‘본질적’ 공간은 가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합리화되고, 일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사와 양육에 충실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반면에 남성은 공적 공간의 상층부를 전유하면서 사적 공간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일중독인 한국 사회는 남성이 어떻게 사적 공간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하라고 다그친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에 남성들의 계급차가 커지면서 공적 공간의 하층

부에 있는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풀이 죽은 남성의 기를 살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화살은 남성 돌봄의 의무를 지닌 여성을 겨냥하게 된다. 공적 영역에 진입한 여성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남성의 일자리를 빼앗은 ‘독기녀’가 되고, 공적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김치녀’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결국 어떤 여성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여성을 혐오하는 이들이 비단 ‘일베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혐오가 한국 사회에 팽배한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여성혐오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지니는 감정이다. 많은 여성이 ‘타자화’를 통해 다른 여성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동일한 여성 집단으로 묶이지 않고 여성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다. 일부 여성들이 “나도 여성이지만”으로 시작하면서 남성의 여성혐오 발언을 되풀이하며 두둔하는 것은 여성혐오가 만연한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신자유주의 부작용의 원인과 해법을 모두 여성 개인으로 상정하면서 여성 젠더를 본질화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은 원자화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이를 잘 증명한다. 자기 계발의 주체, 경쟁의 주체가 된 신자유주의적 개인은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의 최소한의 확장자로 간주되는 가족뿐이다. 가족주의의 강화는 결국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를 공고히 할뿐 아니라 여성의 책임을 강조한다. 여성은 경쟁으로 지치고 불신으로 외로운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정은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해묵은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쉼터

가정이 가장 사적이면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해묵은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욱 강화된다. 원자화된 개인에게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는 가정조차 자신을 감정적으로 위로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상화되고 낭만화된 가족주의는 가족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은폐한다.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반감을 갖는다. 그래서 가정이 결코 사적인 공간이 아닐 뿐더러 사랑과 행복의 상징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가정을 해체하려는 불평분자에 혈연의 윤리를 부정하는 패륜아로 낙인찍히곤 했다. 이러한 낙인은 비단 여성주의자들에게만 가해지지 않는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가족 성원도 마찬가지로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가족 간의 권력은 주로 다양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행사되지만 폭력으로 뚜렷이 가시화되기도 한다. 언어적, 육체적 폭력은 성적 폭력으로 심화되곤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남’인 부부 간의 성폭력도 최근에는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 사회에서 혈육 간의 성폭력을 드러내기란 굉장히 어렵다. 친족 성폭력은 가장 대면하고 싶지 않은 비윤리적 범죄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가족 해체와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친족 성폭력은 밝히기도 어렵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부정당하기 쉽다. 성폭력 사실을 자처를 믿지 않거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반응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이것이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제다. 혈육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렵게 드러낸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더해지는 것이다. 결국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제지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서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된다.

사적 공간이라는 폐쇄성, 이상화된 가족이데올로기, 친족 성폭력에 대한

부정,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이 공고히 결합된 상황에서, 젠더 연령 경제적 권력 관계와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현실로 인한 공포와 무력감을 피해자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친족 성폭력 피해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하루 빨리 격리시키는 지원일 것이다. 친족 성폭력이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는 점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물적 자원이 피해자의 또 다른 가족이나 친족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쉼터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여성주의적 생활 공동체를 지향하며

사회적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인 쉼터는 매우 적다. 이렇게 적은 와중에서도 쉼터의 개수는 사회적 통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쉼터는 더 많고, 사회적 통념이 부정적인 이들을 위한 쉼터는 더 적다. 그래서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는 굉장히 소수다. 쉼터가 사회적 지원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의 대상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의 어려움은 형언할 수조차 없다. 사회적으로 가장 주변화 된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20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 같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도전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여성주의적 사명감과 이 도전을 함께 해주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20년은 활동가와 입소자, 그리고 지지자 동지들의 눈물과 웃음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다.

20년은 작게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고,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으며, 크게는 한국 사회의

통념을 변화시킨 기간이었다. 지금도 친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복잡하지만, 열림터의 20년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퇴보했을 것은 자명하다. 열림터의 존재 자체에 여성주의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감사하는 이유다.

열림터의 20년을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원고 청탁의 취지를 살리자면 쉼터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탬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쉼터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입소자들에게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쉼터는 가장 시급한 지원 중의 하나인 가해자로부터의 공간적 분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문 활동가들과 쉼터 동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쉼터에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고립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생존자'로 변모해간다. 이것이 쉼터 입소자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쉼터가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화된 지향은 현실과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입소자들이 쉼터에서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금세 생존자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어렵게 쉼터에 입소했는데도 적응하지 못하다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조금씩 생존자의 정체성을 구축해가다가 싶다가도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쉼터에서는 잘 생활했던 생존자가 쉼터를 퇴소한 후에는 마치 쉼터에 입소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쉼터의 지향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소자들이 성폭력 가해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한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독립을 준비하는 것은 벽산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쉼터는 활동가와 입소자 모두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활동가와 입소자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활동가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입소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활동가와 입소자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

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여성주의적 생활 공동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적 생활 공동체로서의 쉼터는 쉼터의 특성과 여성주의의 상호보완이 필수적이다. 쉼터에는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이 있고, 권력 관계인 활동가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기만의 방을 갖기 힘들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러한 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와 다양성이 있긴 하지만 가정도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규칙과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물리적 자기만의 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심리적 자기만의 방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은 '자연발생적인 행복 공동체'라는 믿음에 의해 가족과 살 때는 이러한 면들을 자각하지 못하곤 한다. 그래서 쉼터가 훨씬 규율적이고 답답하다고 느끼기 쉽다. 다만 쉼터는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규칙위반을 했을 경우, 또는 일정 기간 체류 후에는 퇴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이처럼 가정과 쉼터는 사실 차이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은 자유롭고 편안한 사적 공간이고 쉼터는 제약이 많고 불편한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에 도전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쉼터의 기준을 가정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족이테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쉼터 모두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쉼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가족이 아닌 사회가 개입하는 중요한 모델이다. 따라서 또 하나의 '집', '대안가족' 등 기존의 가족에 기반한 모습을 반복하기보다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타인이 유사가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보다, 가족이 아닌 타인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족 신화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친족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 곧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자, 어머니의 부재, 거짓말 하는 피해자 등 '비정상 가정'이 원인이 아니라, 사회의 왜곡된 권력 관계들이 '폐

쇄적인 사적 공간을 방패삼아 일그러져 표출된 범죄라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혈연 관계를 넘어서고 제도적 승인에서 자유로운 생활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이 생활 공동체들은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가족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열림터는 이미 20년 전부터 여성주의적 생활 공동체를 꾸려왔으니 그 선견지명과 독심이 감탄스럽다.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본보기인 열림터에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

2

쟁점과 입장

보이지 않는 전쟁 : 섹슈얼한 것과 군 조직문화

공연음란죄와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 반대행동

프리즘 [2014년 여성폭력 관련 법 평가와 과제]

여는글

성폭력피해자보호법 및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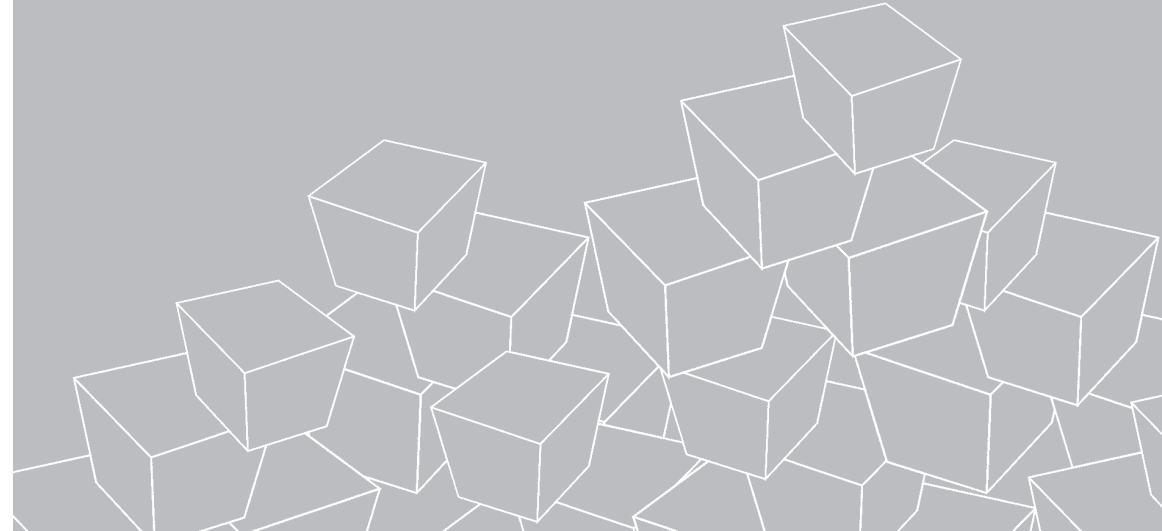
성매매방지법 10년,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

성문화 읽기

드라마 <아내의 자격>을 통해본 한국의 모성, 가부장성과 계급의식
안전한 축제를 질문하기

생존자 말하기

서로가 서로여서 주고받은 따뜻함이 꿈같은 시간



보이지 않는 전쟁 :

섹슈얼한 것과 군 조직문화

김엘리 |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최근 군대 내 폭력 사건이 말 그대로 연일 터진다. 그 중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 또한 언론의 촉수에서 멀어지지 않은 채 관심을 받는다. 기자든 방송작가든 나에게 전화한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 한다. ‘군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성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방부 또한 난처하고 답답한지 지난 3월 11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성인식 강화, 맞춤형 예방교육과 시스템 구축, 피해자 권리보호와 가해자 강력 처벌 등이 골자를 이룬다.

군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폭력이라는 주제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고전적인 이슈이지만 여전히 논의의 기류를 타지 못하고 걸돌고 있는 소재이다. 이는 ‘섹슈얼한 것’에 대한 현실적 사유가 군의 현장에 침투하지 못하고 보안과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군 특수성이라는 방어벽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군의 태도는 지난 2014년 3월 노 소령 사건의 1차 공판 법정에서 노 소령의 변호인의 변론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군의 특성상, 인권과 피해자중심주의 보다는 군 조

직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래서 조직 보전을 위해 지휘관의 명령체계 내 권위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일반법정과 다르다는 점도 덧붙였다.

성폭력을 대하는 군의 자세와 정책의 가닥은 군이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003년에 일어난 육군 김 일병 자살 사건에서부터 2014년 해군 함정 내 여군 성추행 사건까지 일련의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입장은 말 그대로 ‘성’을 자연스러운 개인적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군대 내 성폭력이란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순간의 실수이거나 어쩔 수 없이 잘 못 분출된 화학작용 정도로 치부한다. 2013년 7월 5일, 국방부가 발표한 ‘성군기사고 예방대책’을 보면 성적 취약 보호대상과 관리대상을 지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잠정적 가해자로 상정된 남군의 경우 중 부인과 별거하는 남성군인은 성적 취약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성욕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추정되는 남군들은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하사 아가씨’로 유명해진 송영근 국회의원의 ‘외박’ 발언이나, 가해 남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변 남성지휘관들의 심정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개인적 본능으로 간주되는 성의 전통적 이해는 흔히 남성의 성적욕망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은 이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구도에서 여성의 성은 취약한 존재로 상정된다. 성적 취약성은 여성이 군인이 되기에 부적합한 근거로 이야기돼 왔다. 여성은 야전에서 온갖 악조건과 분투하기에 몸적으로 취약하여 효율성 면에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존재로 가정된다. 남성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몸은 물리적으로나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보호해야 할 여성이 적의 물리적 성적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은 남성/성 능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본다. 특히 무력분쟁 때, 여군이 포로가 되면 성고문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여군은 아군의 전투력에 불리함을 주는 존재로서 골칫거리라고 여겨졌다. 1990년대 걸프전에 파병된 멜리사와

2000년대 이라크에 파병된 제시카의 여군포로 사건은 여군의 업무 범위와 전투력에 관한 논쟁을 가져온 사례이다. 이러한 논쟁을 함축적으로 담은 미국 영화 <시아이제인>은 전쟁 포로의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장면에서 여군 제인의 거친 욕설과 저항을 통하여 성고문의 위협에도 취약하지 않는 여성군인의 위상을 보여주려 한다.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여군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이 성적 취약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공적 담론을 마치 기정사실인양 강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기본적 역할은 타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인데, 성폭력을 통해 자신이 성적대상이 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취약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일이므로 군인의 능력 결핍을 확인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성을 개인적 본능으로 바라보는 군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남성주체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남성들이 성적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진짜 군인의 명예로움이 지켜지는 것이고, 군의 도덕성을 잘 보존하는 길이라고 본다. 명예와 도덕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군인의 명예는 육군사관학교의 금주 금혼 금연이라는 3금제도에 관한 군 관계자들의 인식처럼 통제와 억제를 통해 획득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의 삶에서 인간의 인격과 품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예의를 깊이 통찰하고 행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행위는 군 조직문화의 혁신이 그 품위를 더 갖출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할 때 비로소 빛난다. 그러한 면에서 섹슈얼한 것은 삶이고 문화이며 인간과 사회관계들의 구성물이다.

이제 9천명의 여군이 군에 있다. 그런데 군대에서 여성을 ‘다룬’ 경험이 부족했던 남군들에게 여성이란 함께 일하는 군인이라기보다 돌봐주고 보호하고픈 ‘여성’으로만 여겨질 때, ‘부하에 대한 관심’과 ‘성적 대상’의 경계는 애매하게 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피해경험은 11.9%이지만, 성희롱 발생을 목격한 여군은 41.3%이다. 때로 애정 어린 관

심과 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오고가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남군들의 무지한 행동은 성폭력이 일어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노 소령이 부하 여군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부하 여군은 “감사합니다. 충성”이라는 말로 응답한다. 가족 같은 병영문화, 인권중심의 군 문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던 군 병영문화의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문자만을 보면, 부하 군인을 챙기는 인자한 상관으로 보이지만, 진정성 없는 가족 병영문화는 성적 폭력성의 상황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군이 군 조직의 상명하복의 계급 질서가 성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때이다. 2011년 국방부가 제작한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 자료는 피해자 여군이 가해자 상관에게 “그럴 의사는 없었겠지만”으로 공손하게 말문을 열면서 상관의 행위가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안내한다. 계급질서를 존중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이다.

성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들이 제각각이라서 수치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성폭력 기소율은 35%정도이다. 2014년 최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군과 육군보다 해군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언론이 주목했다. 군인권센터가 2011년 건네 준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남군가해자가 피해자 여군보다 계급이 높은 사건들은 한결같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공소 기각됐다. 이제는 친고제가 폐지되어 사건들의 정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남성중심성과 계급질서가 만나는 군 조직문화는 성폭력의 발생을 지속시키는 조건이며,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통적 관점은 성폭력 발생뿐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오리무중의 방향 상실만을 가중시킨다.

군 연구를 하는 서구여성학자들은 남성중심문화의 보루였던 군대가 여

공연음란죄와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 반대행동

유현미 | 본 상담소 부설 울림 책임연구원

성을 맞이하면서 겪는 갈등의 첨점이 여군에 대한 성폭력으로 나타나며, 성폭력은 남군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의 표명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논하는데 있어 군조직문화의 성차별의 요소들을 추적하지 못하거나 그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여전히 엉뚱한 길에서 군의 강력한 징계만을 탓할지도 모른다. 물론 정당한 사건 처리와 징계를 위해서 성고충상담관 제도와 군 사법 체계의 불합리성을 시정해야하는 제도적 과제는 있다. 그러나 성차별을 내재한 군 조직문화의 결을 드러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적보다 막사 안에서 함께 지내는 남군이 적이다'라는 여군들의 비유처럼 안팎에서 싸워야하는 여군들의 진퇴양난의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전문적인 여성사회단체와 연결하여 동맹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4년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다. 혐의를 적극 부인하던 그는 cctv 감식 결과에 마지못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비웃음을 받는 소위 바바리맨과 권위의 상징인 고위 검찰간부의 모습이 겹쳐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사건 직후 김 전 지검장은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입원했다. 심각한 우울증, 성도착증, 성선호성장에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평판이 좋았던 엘리트 남성이 '정신병 환자'의 모습과도 겹쳐지면서 그의 공적 자아는 한순간에 붕괴했다.

흥미롭게도 김 전 지검장의 행위는 얼마 후 발생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가해행위와 다르게 읽혔다. 김 전 지검장의 행위는 위계를 이용한 명백한 '성(性) 갑질'인 박 전 국회의장의 행동과 달리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한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이해되었다. 적절하게 성욕을 해소하지 못한 개인의 일탈행동이

1) 경향신문 9월 16일자 기사, "[표창원의 단도직입]성(性) 갑질을 멈추게 하라",

질병의 수준으로까지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라는 환자복을 입자, 동정 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외로운 관사생활이 원인이라는 추측, 직장과 사회생활 모두를 잃었는데 엄한 처벌은 가혹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치료 중이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이었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상인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당하기 쉽지만, 환자 정체성은 치료 교정의 대상으로서 일정한 책임면제와 배려를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 전 지검장의 발빠른 입원이 의도한 바다.

검찰간부에서 정신질환자로, 김 전 지검장의 변신에 적극 일조한 곳은 그가 속한 조직이자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찰이었다. 김 전 지검장은 거리에서 성기노출과 자위행위를 했다. 이는 현행법상 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경찰의 기소의견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자는 것이었고 검찰은 이를 두고 3개월 동안 판단을 미뤘다. 유아무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에 고심하던 검찰은 기소의견을 시민에게 묻는 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함구하다 11월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처분의 근거는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 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으며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성선호성장애라는 면죄부

검찰의 법적 판단에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의학 심리학 전문가의 언어와 권위에 기대 특정 행동을 해석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인식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범죄나 사법 영역에서 심리측정과 검사

결과, 정신진단서, 의사 소견은 과학,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의학의 언어가 이번 사건처럼 바로 법적 면죄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나 특수함에서 찾기에 오히려 치료 명목의 치료감호나 성충동약물 치료 등의 새로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왔다.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을 때는 ‘노출증’이나 ‘성도착증’이라는 진단명이 붙어 행동의 범죄성과 재범위험성, 다른 성범죄가능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²⁾. 덧붙여 지금까지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들의 기소율은 85%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이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며 성선호성장애란 용어를 가져왔다.

성선호성장애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선호성 장애는 성도착증과 동의어다. 성선호성 장애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기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성도착증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성도착증이 대중적으로 더 알려졌고 법조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인데, 주목할 것은 노출증이 성도착증의 하위 범주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제질병분류기호의 성선호성 장애에 대한 설명은 성도착증을 부제로 달고 있으며 하위 범주로 노출증을 포함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이 성도착증의 다른 하위 범주인 소아성애, 관음증, 가학·피학 성향 중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확실하다. 노출증과 다른 성선호성 장애라는 검찰의 설명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낯선 용어를 강조하면서, 그것

2) 예를 들어 조운오, 이미정(2009)의 「성범죄자의 성적 이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한국 공안행정학회보, 34호)」 같은 연구에서는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성범죄자들이 증세를 보이지 않는 일반 성범죄자보다 동종 전과 횡수와 다른 성범죄 범행률이 높기에 광범위한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성도착자들의 잠재적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고 주장한다.

을 의문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얻고자 하는 바는 명백해 보인다.

공연음란죄 처벌과 정의

성폭력 원인과 해결을 가해자 개인의 심리나 행동에서 찾는 개인화된 인식들이 지배적이고, 이런 의학/심리학 담론을 상황에 따라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는 사법기관이 있는 현실에서,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명백한 성폭력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유효할까? 성폭력 해결을 사법기관의 임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법 담론에 기대 성폭력 대항노리를 구성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법기관의 한 방 판결로 정리되는 형식으로 협소화시키기 쉽다. 모든 성폭력이 곧 성범죄인 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대응을 성범죄로서 법적 처벌 위주로 갈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지는 사안과 맥락에 따라 다르고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논의나 고민 없이 바로 성폭력=성범죄로 환원시켜 사법부의 역할만 요구하는 것은 성편향적이고 성통념에서 자유롭지 않은, 개혁의 대상인 곳에 더 많은 정의(definition과 justice의 측면 둘 다)의 권한을 맡겨버리는 꼴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법과 사법기관에 정의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은- 특히 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대개 보수적인 통치 욕망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공연음란죄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이라는 법익을 해치는 성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 245조)로 설명되면서 많은 경우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1994년 연극에서 여배우의 신체 노출을 지시한 연출가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한 것, 2010년 가수 지드래곤의 공연 중 성행위 묘사를 공연음란죄로 수사한 것처럼 문화표현물에 대한 일종의 검열로 적용되어 온 여러 사례들을 들 수 있겠다. 공공장소에서의 애

정행각이나 옷차림을 풍기문란, 기강 단속의 목적으로 공연음란죄라 처벌해 오기도 했다. 이런 법 적용 하에서는 쿼어 퍼레이드나 슬릿워크에서의 거리 행진도 공연음란행위로 단속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이 성폭력이라 말하는 것과 이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는 더욱더 섬세한 줄타기가 필요해 보인다.

섬세한 줄타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번 사건의 여론에서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이 다른 성폭력에 비해 지위나 권력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피해의 정도나 해악이 덜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권력관계가 소거된 이상욕망의 문제라는, 정신의학의 설명이 더 힘을 얻은 것인데 과연 그러할까?

이 사건에서 권력관계는 없다가보다 유동적이다. 박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과 다시 비교해보자. 박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에는 서비스 구매자-제공자, 할아버지뻘 되는 나이 차, 전 국회의장과 '캐디'라는 사회적 지위 차까지 여러 요소들이 확실하고 고정적인 위계를 드러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의 피해자 한 명과 가해자 한 명도 명백하다. 이 뚜렷한 권력관계, 즉 갑-을 구도에서 갑의 잘못은 더 부각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김 전 지검장의 성기노출과 자위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도로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한 명으로 특정되기보다는 불특정적이다. 원래 이것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의미다. 이 불특정 목격자들에게 피해의 의미나 피해자로서의 정체화는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이거나 두려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똥뺏은 것처럼 불쾌할 순 있어도 심각하지 않은 해프닝일 수 있다. 또는 장난, 조롱으로 맞받아치거나 맞서 싸울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이 놓인 상황의 권력관계나 대응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인 측면이 많다. 그렇기에 공연음란죄로 고정시켜 범죄화하는 것은 당사자의 불특정성과 대응의 유동성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길거리괴롭힘 반대행동의 시사점

어떤 다른 대응과 언어가 가능할까? 법과 전문가에만 맡기지 않고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의 정의(definition)와 그 해결의 정의(justice)는 어디에 있을까? 해외의 움직임을 소개하며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이에 의해 입게 되는 경멸이나 모욕을 담은 눈짓이나 욕설, 외모비하 같은 언어적 괴롭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촬영, 성기노출, 쫓아오기 등의 피해를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으로 문제제기하고 집단적 해결을 모색하는 풀뿌리운동이 활발하다. 2000년대 중후반 미국의 여대생,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길거리괴롭힘 반대행동은 할러백(www.ihollaback.org), stop street harrasment 모임 등을 기반으로 현재 26개국 79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풀뿌리 행동은 다양한 길거리괴롭힘 사례들을 최신 미디어기술(스마트폰 앱, 플리커, youtube)을 활용해 공유하고 대처법, 해결법까지 나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최신기술 활용이라는 새로움과 더불어 집단적 서사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의식교양을 강조하는 방향은 소수자에 대한 전통적 사회운동 방식과 이어져 있다. 전통적인 것은 현상 자체에도 있다. 여성, 유색인, 장애인, 성소수자처럼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기 쉬운 집단에게 가해지는 공적 장소에서의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있어왔다는 뜻이다³⁾. 존재했지만 하나로 엮여 문제화되고 대응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길거리괴롭힘이라는 개념 아래 모이면서 이 개념을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운동의 한 영역이 되고 있다.

길거리괴롭힘은 공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의 한 형태로 정의되기도 하고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나 인권침해의 한 형태로 설명되기도 한다.

행동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이 운동은 길거리괴롭힘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방식으로든 뻗어가고 있다. 보고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절반의 여성과 1/4의 남성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에 걸쳐 길거리 괴롭힘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경험자가 발생 장소를 회피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도시에서 작성된 보고서들도 비슷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의하는 것, 목격자이자 당사자로서 여성과 소수집단의 대응역량을 기르려는 것, 오래됐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길거리괴롭힘 반대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젠더 권력관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일상적 폭력, 괴롭힘, 차별은 개인과 사회에 자연스럽고도 강고하게 침투해 있기에 범죄에 대한 법과 의학의 목소리만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적 공간에서 김 전 지검장 같은 행위가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조건, 즉 젠더권력관계는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취약한 피해자성(충격을 받은 신고 여학생)으로 화석화되었다. 유동하는 젠더권력관계를 시야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움직임이 다시 중요해지는 때이다.

3) Jill P. Dimond 외(2013), "Hollaback! The Role of Collective Storytelling Online in a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CSCW 13

성폭력피해자보호법 및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김미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2014년 여성폭력 관련법의 평가와 과제

2014년은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폭력 관련법 마련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지만 우리사회의 왜곡된 통념과 성문화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 법제도 마련의 취지가 현실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호 프리즘에서는 2014년 여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평가하고 과제를 정리해본다. 첫 번째 글에서는 성폭력특별법 20주년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평가와 과제를 정리했다. 제도적 변화와 정책의 양적팽창으로 이룬 성과와 그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균형감있게 조율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 평가와 과제를 정리했다. 10년 동안 성산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을 강조해온 반성매매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할 전망을 담았다.

2014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해이다. 성폭력피해가 성폭력이라고 명명되지 못하고 드러낼 수 없는 개인적 불행쯤으로 여겨졌으며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20년전에 비하면 현재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많은 상황이 변했다.

성폭력 근절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표방될 만큼 성폭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형량의 수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수강명령,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등을 위시한 다양한 처분이 가해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제도 확대되었다. 피해자 권리담론에 기반하여 형사사법절차 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담, 의료 및 주거등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한 상담소와 쉼터, 통합지원센터, 전담 의료기관, 무료법률구조 지원기관 등 전달체제도 정비되었다. 무엇보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공공기관은 물론 5인 이상 민간사

업장의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었다. 이로써 예방교육 콘텐츠 생산과 강사 양성도 정부의 책임이 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킬 기반도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성폭력 특별법이 존재한다.

민간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부 정책변화와 제도개선을 추동해 왔으며 그 과정은 상당부분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성폭력관련 제도적 변화는 성폭력특별법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정해 낸 성폭력특별법은 여성인권운동의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만하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변화

1991년과 1992년에 발생한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 촉구 공청회 및 토론회, 서명운동, 입법활동, 관련 연구 등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성폭력특별법은 제정 이후 15차례의 제·개정이 이뤄졌고,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으로 분리 입법된 이후로도 6차례의 제·개정이 있었다.

성폭력방지법의 제·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지원 시스템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의료비 지원의 항목과 규모, 지원대상을 점차 넓히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을 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정부가 상담소 등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상담소 등이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은 물론 정부의

의료비 지급이나 법률구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작동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간단체와 예산지원을 명목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간 긴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력과 긴장관계가 반복되어왔다.

피해자 지원체계의 변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00년을 전후로 민간성폭력상담소가 양적으로 팽창되었다. 2004년에는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05년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2010년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대상과 기능을 통합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와 같은 국가주도형 통합지원센터가 등장하였다.

199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개소 이후 2001년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소, 2010년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개소, 201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쉼터 개소 등이 이뤄졌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이며, 긴급구조이후 갈곳이 없는 피해여성을 위해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 쉼터,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체계가 외형상 시스템을 갖추고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성과이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한 그간의 정부정책은 중장기적 계획속에서 마련되기 보다는 다급하게 민감한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왔다. 임기응변식 대처에서 중장기적 목표 수립후 각 지원

성매매방지법 10년,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체계가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과 지원체계간의 특성이 존중되는 유기적 협력과 네트워킹 등 이제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피해자 보호법 및 지원체계의 과제와 제언

시간 20여년동안의 지원체계 마련과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공백이 존재했던 소수그룹의 피해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 탈북여성, 성소수자 등과 같이 현행 체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상호협력적 긴장관계는 필수적이다. 민간 영역 및 지원체제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특별예산 편성방식이 아닌 일반예산으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재원을 2011년부터 일반예산에서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전환하였고 범죄피해자기금의 800여억 원 중 300여억원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개입하고 있는 행위자 역시 다양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종사자인 상담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경찰,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들이 협력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 시기 구축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각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점검을 통한 체계화, 지원체계내 행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정책도입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이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년 1월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한국사회 성산업과 성매매 현실,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성산업의 확장을 방관하고 더 이상 여성인권상황을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성매매문제를 문제화하였으며, 법 제정으로 이어져 많은 변화를 이뤄왔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의 발생과 확산, 그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산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요구하는 법이다. 이는 남녀불평등한 권력구조에서 빈곤, 생계,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성산업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문제를 삼고 있다. 법제도화 운동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풍속의 하위범주, 혹은 도덕적 영역에 머물렀던 문제를 성매매로 명명함으로써 우리사회 성매매와 성산업 문제를 이슈화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평등하게 운영되어 왔을 것 같은 법체계의 남성중심성, 성별불평등에 의한 편향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성산업, 성매매와의 싸움은 매우 지난하다.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으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과 함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사회통념과 편견은 법제도 이전의 우리의 의식과 관행, 문화의 문제다.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착취피해 여성들을 구조·지원함과 동시에 성산업 착취구조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해체시키는 활동들로 그동안 은폐되어 온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장소제공 및 광고행위의 실체와 성매매현장의 폭력성과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밝혀내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현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은 선불금 등의 빚 문제와 폭행, 위협의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닌 질병, 진로, 주거 등 생존·생활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여성들의 탈(脫) 성매매를 가로막고 있다.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빚 문제와 폭행,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신고·고소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성매매의 행위자'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불법원인인 선불금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비용은 여성들의 개인채무가 되어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로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에서 강조되듯이,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해 나가면서 정상적인 서비스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성매매영역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저연령화와 전지구적 성착취를 동반한다. 성매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분석은 여성이 그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착취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성매수의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폭력인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수자에 대한 온정적 태도, 접대와 비즈니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성매수를 한 것처럼 취급하면서 성착취 행위의 주요 가담자이자 행위자인 성매수/구매자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접근하였다. 술 때문에, 스트레스로, 혹은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성매수/구매행위자들의 행위를 너그럽게 대하다 보니 단속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성매수 행위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돈(여타의 댓가제공)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며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남성권력을 행사하는 성폭력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이다.

타인의 성을 사는 행위(성적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로 표현되기도 하며 성매수, 성구매로 불리운다)를 불법화하는 정책의 변동은 1) 국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2)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성매매 시장 규모를 줄이고 3) 성매매 유입을 막아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 착취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더욱 더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차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성매매현장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부정과 부패, 유착비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돈'과 위계, 위력으로 통제하는 알선업자, 성매수자들의 폭력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성산업의 확장과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적 가치가 '부패'와 '불공정'을 키운다.

지난 10년 동안 성산업에 대응하는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겨우 첫발을 디뎠을 뿐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기반부터 더 탄탄히 구축해야 함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화 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 신변중, 인터넷, 전자매체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한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 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기관의 책무와 함께 입법기관에서도 법 개정과 함께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해 나가야한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와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법 제정과 시행 10년에 성매매방지법을 올해 전면 개정되어 9월28일 지원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

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하고 장기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체계가 확대되어야 여성들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성 평등한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전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착취 근절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해 전진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것은 교육으로 통한다 :

드라마 <아내의 자격>을 통해본 한국의 모성, 가부장성과 계급의식'

권인숙 | 본 상담소 부설 울림 소장

2001년 '아줌마'로 큰 화제를 낳았던 정성주 작가의 오랜만의 컴백작품인 '아내의 자격'은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JTBC 에서 매주 수목 9시에 16회 동안 방영되었다. 2011년 12월 시작하여 시청률이 1%에도 못미치며 고전하는 종합편성채널²⁾에서 유일하게 4% 이상의 시청률³⁾로 30, 40대 이상 여성들에게 큰 인기와 명품 드라마라는 호칭을 얻으며 화제를 낳았다. 아내의 자격이 명품드라마라고 불리는데는 교육과 불륜이라는 선악의 가치관으로 다루기 쉬운 소재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균형감있게 진행하였던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불륜이 현재의 자신을 재점검하는 성찰의 기회이고 남편, 부부, 부모, 시부모, 며느리 관계의 근본골격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사용되었다. 정성주 작가가 그려내는 교육과 모성 또한 단순하지 않다. 불

1) 이 글은 "It All Leads to Educ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7(1), pp.39-70에 게재된 논문에서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2) cable TV와 비슷하지만 뉴스등 모든 장르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형식.

3) 최종회의 경우 4.419%(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조사,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은 6.013%.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에 의하면 "종편에서 4%는 지상파였다면 30%의 시청률이고"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대호, 한국기자협회, 2012년 4월 26일.

륜보다는 권선징악적 요소가 더 드러나지만 한국 교육의 복잡한 현실이 어떠한 접근에서도 단순할 수 없음도 확인된다. 계급투쟁의 최전선의 장인 교육투쟁 안에서 불행한 아이도 있지만 편안하게 적응하고 있는 아이도 있다. 오히려 새로운 교육방식에 만족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엄마들도 그렇다. 자신감이 넘치고 지적이다. 교육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며느리 아내에 대한 기존방식의 가부장적 억압이 약해진 모습도 보인다.

아내의 자격은 교육과 모성의 현실을 신랄하게 묘사하였지만 무언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적 가치나 논리는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을 둘러싼 신분적 욕망구조에서 누구도 자유롭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이 한국사회의 교육주체로서의 등극을 부정과 긍정의 이분법으로 바라보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지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박소진은 엄마의 교육주체로서의 등장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현상으로 이해하였다(Park, 2007). 단순한 욕망구조나 엄마의 과잉대리만족 욕구로만 볼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변화를 따라잡아야 하는 가족단위의 전략적 선택이나 추수현상으로 읽는 것이다. 기혼여성은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시민권을 교육을 통해서 얻고, 그 시민권적인 정체성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여성의 최선의 전략임이 공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을 통한 가족내 성원권과 사회적 시민권

작가 정성주가 아내의 자격에서 모성을 그려내면서 탁월한 점은 강남 중상류층 전업주부의 교육에 대한 집착을 자기결핍이나 보상욕구에 시달리는 병들은 모성의 발악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청자계시판에도 현실과 똑같다는 반응은 있지만 대치동 엄마들의 모습을 선악의 관점에서 비난하는 글은 거의 없다. 교육과 관련해 개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의미가 없

다는 것의 사회적 공감과 비판을 하기에는 자신도 비슷한 욕망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엄청난 확산은 투자에 따른 교육 서열을 낳았고, 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 진입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아내의 자격에서는 대치동에서 국제중을 준비하고 국제중에 들어간 이후에는 미국의 기숙학교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엄마들이 교육의 주요한 주체들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명문고나 대학을 목표로 하던 입시준비와는 확연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단순주입식 교육과는 양태가 다른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토론위주와 사고능력을 자극하는 교육방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단순히 피곤에 젖은 꼭두각시 같은 느낌은 별로 없다. 경쟁심을 과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눈을 반짝이며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한다. 주인공 윤서래의 아들 한결의 경우 국제중 준비학원에 참여하면서 공부가 재미있다고 눈을 반짝였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하는 무의미한 교육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것이나 선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펙에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실천하는 것 등 각종 부정적인 영역이나 창의적(?)인 영역까지 역할이 확대되었다. 미국 사립고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단편영화 만들거나 판타지 소설 대필출간 등은 엄마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다. 봉사영역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가와 같이 협의하고 계획한다. 이들이 학원에서 아이들 진학 관련한 회의를 나누는 장면은 웬만한 대기업 간부회의 이상으로 진지하고 심각하다. 근사한 개인별 마이크가 준비된 고급스러운 전문 회의실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최신 기기를 동원하여 그래프한 자료를 보면서 진행한다.

새로운 관계의 프레임: 갑과 을

정성주 작가는 아내의 자격에서 단순한 계급적 지위를 넘어 다양한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갑과 을의 묘사에 반응하는 글이 많이 실렸다. 한 시청자는 “갑중의 갑이라? 갑중의 갑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너무도 당연한 현태가 무섭네요. 그런 갑중의 갑한테 맞추려는 갑이라는 인간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글을 남겼고, 다른 시청자는 “그리고 지금의 상진이 언론인인데도 이혼에 대해 고심하지 않고 툭툭랄라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나는 갑의 출신이니 보잘 것 없는 을을 선택할 만큼 의식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을이 주제도 모르고 외도를 저질렀고 나는 정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합리화했기 때문이죠”라고 글을 남겼다.

시청자들도 갑과 을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석하거나 반응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최근 계약에서 쓰이는 갑과 을의 관계를 일반 사회관계에 적용하는 대화법을 가끔 듣게 되는데 정성주는 이 대화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을의 관계성은 강남 중상류층의 다이나믹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갑을의 문제를 단순한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 직업, 젠더 모두의 문제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주인공의 남편인 한상진은 윤서래에게 ‘나는 내 아들이 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소리친다. 아내의 자격에서 진짜 갑은 단 한명이다. 윤서래 시누이의 시아버지, 대형로펌의 대표이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고 을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적은 사람. 윤서래 시댁이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의식하며 위기에 의존하는 상대. 시누이 남편의 외도녀가 관심을 온통 쏟고 있는 사람도 시아버지이고 시누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 때도 시아버지에게 우선 알리려고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따위의 의사는 고려치 않고 손자를 만난다. 시아버지가 외도사실에 개의치 않자 아들은 당당해지고 울고

있는 부인에게 ‘아버지 처분 기다려’라고 차갑게 이야기한다.

갑은 누구인가?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 돈과 직업을 주는 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자, 학벌사회에서 학벌 때문에 기죽지 않을 자,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자, 성욕을 내키는대로 표현하고 살아도 무방한 자, 무슨 짓을 해도 평가 받을 일이 없는자, 내 기준만을 들이대고 살아도 문제 없는 자 등. 정성주 작가는 학벌, 돈, 지위, 젠더, 살고 있는 지역을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물론 갑과 을은 유동적이다. 사회 일반적으로 갑의 신분을 떠지만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누구나 꿈꾸는 결혼을 하여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듯한 윤서래의 시누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이다. 여자이고 결혼을 통해서 얻는 성취지위이고 딸만 낳았으며 친정이 시가에 우위에 설 요소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갑과 을의 상황에서 이혼은 누가 보기에든 을에게 불리하다. 전업주부인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남편은 자신의 외도와 아들이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여자는 마치 자기가 외도를 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기가 죽은 모습이다. 여성의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이 끊임없이 성원권에 대한 도전을 받은 위기의 존재성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결론

아내의 자격의 기본 구조는 어머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불륜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 대리 만족을 하고 신분을 형성하려는 부모의 성취욕구는 간단하지 않다. 현실은 전체 사회 계급의 투쟁과 성별, 관계에 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함께 불행하거나 행복할 수 없고, 악을 극복하는 개념을 통해 해결될 수도 없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윤서래와 같이 새로운 남자와 처음부터 시작하여 생존의 문제와 갑을 관계에서 탈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청자 게시판에 한 신청자는 윤서래는 궁극적으로 단지 신데렐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엘리트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글을 남겼다(그 또는 그녀가 결혼의 의해 스스로의 계급적 지위가 상승될 수 있다면, 아이가 더 높은 계급과 결혼할 수 있다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좋은 사회적 지위를 거부할 것인가?). 또 다른 시청자는 계급적 지위의 상승과 연결되어 교육의 문제를 통해 너무 많은 욕망과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 현실의 완벽하고도 복잡한 설명과 불륜을 통해 여성이 변화되는 느슨하고 비현실적인 대조적인 묘사는 정성주 작가가 쓴 아내의 자격의 키 포인트이다. 2010년대 한국사회 안에서 어머니의 불륜은 혼외정사를 통해 얻은 자유와 자존심에 의해 대응되는 너무 복잡하고 강렬한 무언가이다.

안전한 축제를 질문하기

진기 | 전 한양대 총여학생회

지난해 9월 말, 숙명여대 총학생회에서 복장에 대해 규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기억한다. 학생들 뿐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내놓았다. 당시의 의견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의상을 입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학생회에서 규제하면 안 된다.
2. 최근의 대학가의 축제는 선정성 논란을 빚어왔다(이번 사건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객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의상을 입는(다양한 방식의 암묵적인 강요로 입게 만드는)것은 자기결정권인가? '안전하고 건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숙대 총학생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숙대 내부에서 복장 규제에 관한 논란은 몇 년에 걸쳐 있어왔다고 한다. 숙대 총학생회의 고충은 짐작할 수 있다. 확실히 축제는 생물학적 여성

이 학교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대에서조차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아니 정확히 학교라는 공간은 아직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다.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 휴게실은 사라져가고, 남아있는 여학생 휴게실마저도 밤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학교측에 개방 건의를 했더니, “늦은 시간엔 여학생들은 위험하니 집에 가라” “여학생들이 외박을 할 때 학교 핑계를 댈 수 있으니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여학생을 총여실로 옮겨 쉬게 하겠다고 하니 “총여실엔 여자만 있으니 위험하다, 남자들이 지킬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하는 남학생도 보았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석보장’ 이라든지, ‘오빠 자고갈래’ 같은 문구들이 경쟁적으로 학내 주점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위험한 공간이 되는 것은 온라인 공간도 마찬가지다. 축제기간이면 어떤 단과대의 여학생들이 섹시한지를 논하거나 어떻게 모델로 데려왔는지에 대한 무용담으로 넘쳐난다. 그렇다면 치마길이를 규제하고 교복을 입지 않으면 좀 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위의 상황들의 공통점은 그 언어 속의 여성이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장을 규제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입을지가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한 것 아닌가? (누군가의 복장을 학생회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규제할 수도, 벌금을 매길 수도 있다는 상상력은 접어두기로 하자.) 어떤 옷이 야한 옷인가, 누구에게 야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어떤 복장을 ‘야한 옷’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왜 야한 옷을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강요 받고 있는가. 스스로 입기 위한/ 입지 않기 위한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 질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리는 20대 여성으로 살면서, 나를 대상화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학교는 많지 않고 그마저도 여성혐오와 현실적인 위기들을 맞닥뜨리고 있다. 여성주의나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센스도 유머감각도 없는’ 일이

되었다. 현대 한국의 20대의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어떻게 상품화 하여 취업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조금씩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조차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공론화할 장도 없다. 모두가 같은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 내 탓이 되기는 너무나도 쉽다. 지금 당장 내가 기준에 맞추고 예쁘게 보여서, 적극적으로 대상이 되기를 선택해서 취직을 하는 것은 절실하고, 남에게 가질 관심과 배려가 서로 티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욕먹지 않는’ ‘좋은 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너 그대로 아름다워’ 라는 말은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하루 하루 수습해내기 바쁜 이들에게, 당장 눈앞에서 나를 대상화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존재의 논리를 넘어서서 생각해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의의 길이를 재는 것과 같은 이런 화법은 너무 익숙하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의 예시를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스티커가 붙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픽토그램 중 하나는 에스컬레이터 아랫 칸의 사람이 윗 칸에 선 여성의 치마 밑을 사진 찍는 광경이었는데, 놀랍게도 사진을 찍는 가해자의 말풍선은 “치마는 가려주세요” 였다. ‘야한 옷’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치마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치마를 가리고 계단을 올라간다. 지금 당장 내가 치마를 가리지 않았을 때 사진을 찍거나 훑쳐볼 것이라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마 밑을 찍거나 훑쳐보는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것은 (보이는데 어떡하느냐, 나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니가 가렸어야지, 내가 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거냐) 오랜 경험으로 학습해왔고 거기에 대응하는 ‘더 피곤한 일’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치마가 짧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 찍는 것은 범죄겠지만, 누가 오해 받을지도 모르니

까,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게 그냥 당신이 알아서 적당히’ – 치마는 가려주세요 – 라는 말을 읽어내고,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도 니 탓이야’라는 모순된 메시지 속에서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피곤한 삶 속에서 ‘왜 그렇죠?’라고 질문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든 이 책자를 받아 들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외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안전한 축제’는 필요하다. 내가 설령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다면, 적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안전한 축제가 필요하고, 애초에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이 필요하다. 왜 아직도 학교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야 하는지, 왜 내가 당신에게 예뻐 보여야 하는지, 왜 내 치마를 남자친구가 나서서 가려주고 있는지, 질문하고 질문의 주체가 되자. 더 이상 말해지지 말자.

서로가 서로여서 주고받은 따뜻함이 꿈같은 시간

무음 | 1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참여자

말하기대회에 대한 원고 청탁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말하기대회 과정 말고도 내가 글로써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또 생긴 것이 감사하고 기뻐했다. 10월 30일. 아직 말하기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나를 포부를 가지고 여러 고민을 해봤지만, 썼다가 지웠다만 반복할 뿐 난 아직 제대로 된 글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작 말하기대회가 끝나고 나니, 100여 일 동안의 그 시간들을 어떤 말로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제일 큰 변화로는 말하기대회를 하면서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었고 많은 따뜻한 관계들이 내 생활 안에 들어온 것이다. 100여 일, 연애라면 이제 막 한창 설레는 풋풋한 기간이다. 그 짧은 시간에 말하기대회를 같이 한 햇살, 이한, 은수, 민희를 향한 내 마음은 급격히 허물어졌다. 친인이나 애인하고 둘만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을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남들 앞에서 솔직하게 굴었다. 그렇게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뢰를 주고 인내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기다림 때문이었다. 성폭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말을 하면 안 되게 느끼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의식적으로 비밀로 묻어둬야 했던 내 일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말하기대회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인격체로 있는 일이 얼마나 편하고 무서울 게 없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말하기대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불리 사람들 앞에서 성폭력에 대한 경험을 말했다가는 그 때의 몰아치는 감정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다. 웃기지도 않은 표현이지만 내 인생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주홍글씨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까 봐 무서웠다. 맨 처음 상담소 활동가와 면담했을 때, 무례한 질문인 줄 알면서도, "혹시 아빠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냐?"고 물었다. 내 성폭력은 강간이 아닌 추행과 괴상한 정신적 학대인데, 그리고 뉴스에 보도되거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모르는 괴한'에 의한 일도 아니고 아빠라는 '남' 아닌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이 받아 줄 수 있을지 겁이 났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에 존경 받아 마땅하며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격체라는 상징을 붙여 넣는다. 그런데 무려 그런 '아빠'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을 가했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혐오스럽게 느껴질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내 몸은 얼마나 끔찍하게 보일지 가늠이 안 되었다. 공교롭게도 말하기대회를 시작하고 보니 성폭력 가해자가 친족이었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가족'이나 '부모님'에 관한 환상적인 상징들 때문에 친족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리 사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에 취해 '가족'이나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를 너무 안일하게 사적이고 보편적인 사랑과 헌신의 관계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

매 번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감정과 기억의 되새김질이 지켜올 정도로 반복적이어서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있나 싶었다. 이미 그 동안 일기장에 너무 많이 썼다가 버렸고 언니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도 너무 많이 말하

고 싸우며 일을 벌려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는데,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보니 아직 내 삶이, 감정이 다 정리 되지 않았다는 것도, 완전히 정리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떤 날은 이미 그렇게 살아버린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들 때도 있었고,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민희랑 차례로 돌아가며 아빠가 했던 또라이짓을 나열하는 배틀도 했는데, 웃고 맞장구치며 분풀이를 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은수랑 밤새도록 분명히 심각하고 슬픈 얘기였는데 각자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배꼽 잡고 웃으면서 한 날도 있었다. 그 웃음이 마냥 즐거운 웃음이야 아니었지만, 화와 슬픔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웃으면서 풀 수도 있구나 싶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말을 한다는 건 무겁고 우울한 에너지를 즐겁고 힘이 되는 방식으로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다.

유난히 집에 들어가기 싫던 말하기대회 뒤풀이 날에는 분명 해낸 것이 기쁘고 후련했는데, 사실 이전 그런 지도 잘 모르겠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방식으로 내 자신에게 화가 치밀기도 한다. 상상뿐이지만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것처럼 내 삶에 충격을 주고 싶은 충동도 있다. 무슨 일이던지 간에 치열하게 온 정신이 파묻히도록 매달려볼까 하는 초조함으로 그 무슨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합리적인 결단이 될지 고민도 한다. 계속 술이 마시고 싶기도 하다. 뭐가 변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허무감도 든다.

그럼에도 나는 일상의 연속선상 위에 비교적 잘 서 있다. 건강을 챙기려고 야채를 볶아서라도 먹고, 빨래를 돌리고, 예정되어 있던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간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술이 먹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참으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니까, 음식을 손질하고 청소를 하게 된다. 공동 거주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농담에 웃고 면박도 주고하며 그 순간의 작은 즐거움에 취하

기도 한다.

그렇지만 말하기대회가 결국은 끝이 난 것처럼 내 삶의 몇몇 상황과 감정들도 이제는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초조한 압박감이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벗어나야겠다는 강박이 말하기대회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커졌었다. 그래서 생일날 무작정 집을 나왔다. “갈비 안 먹어!”라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고는. 어렸을 때부터 스무 살이 되면 집을 나가야지 했던 걸 지긋지긋하게도 실천하지 못했었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굴욕적이기는 해도 그나마 덜 무섭고 익숙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년 생일만 되면 의례처럼 참담해지고는 하는데, 생일 일주일 전부터 갈비 먹으러 가자는 엄마의 말이 너무 싫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고 그리고 생일날 갈비까지 먹어야 한다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기대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고 집에 있는 것조차 눈치잡처럼 보일 까봐 걱정하며 거짓말을 해온 시간도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엄마 아빠는 내가 화목한 가정의 일원으로 역할 하기를, 그리고 자기들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할 텐데 그 기대가 너무 힘들었다. 마치 아빠가 “왜 내 가슴 만졌냐?”는 질문을 듣고 인정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없던 말로 취급하고 살아온 지난 4년이 힘들었을 것처럼 말이다. 아직도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굴욕감이 나 내 자신을 부정하는 기분 없이 그냥 바쁘게 나로 살아가는 충만감이 좋다. 집을 나온다고 세상이 무너지거나 다 나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야 집을 나온 게 후회도 났지만 내가 세상이 무서워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힘을 기르고 적당한 때에 나오기를 잘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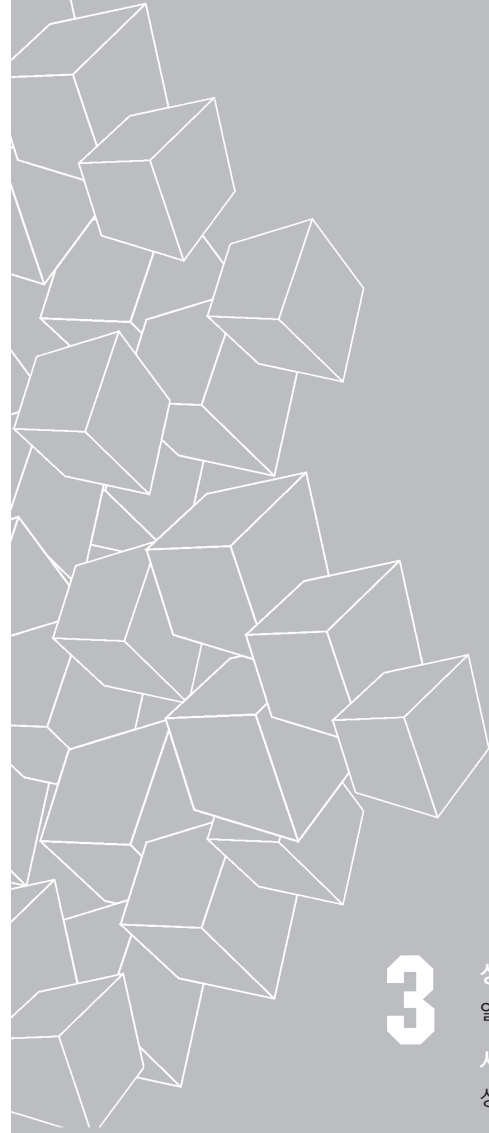
아직도 두려움은 많다. 내가 나로 사는 일에 대해서 세상 모두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처음으

로 아빠의 폭력을 얘기했더니 도리어 연락을 끊어버렸던 수학선생님도 그렇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너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기대회에 오라고 초대하기도 전에, “가족 일을 왜 공론화 하려고 하나, 용서를 못하나”고 말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한다고 다 이해해주는 것은 아님을 겪게 되었다. 선생님은 결국 오셨고 말하기대회 무대가 끝나고 뵈게 되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나에게 차분하고 밝게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분노가 있냐고 용서할 생각은 있냐는 말씀에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은 내가 일기처럼 보낸 수십 통의 편지를 빌미로,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가득 들어 있다며 내가 모르는 나를 자기만 알고 있는 듯 말씀하신다. 선생님은 나에게 편지를 줄 테니 만나자고 하고는, 만나면 아직 편지를 읽을 만큼 내가 성장한 것 같지 않다고 보여주지 않는 일을 반복한다. 선생님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안다. 다만 선생님은 나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나에게 갖다 댈 뿐인 것이다.

수학선생님처럼 말하기대회를 들으러 온 모든 관객들이 내 말을, 내 감정을 내가 목적인 대로 이해해주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하기대회를 시작할 때는 그게 제일 겁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의 억압이나 판단에 침범되지 않고 내가 나임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나?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한 말이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표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껏 언제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나는 내 자신에 자아와 주체성의 경계를 허물고 맞춰주며 타협해 왔다. 일에 대한 문제나 정치, 학문의 관점에 대한 문제에는 양보와 존중이 가능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인 것에는 상황에 따라 타협해 줘야 할 사정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타협해주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한 순간적인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이 될 뿐이니까. 앞으로는 내가 나이면 될 간단한 문

제를 그렇게 거짓말로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집도 나오게 되고 정말 말하기대회도 하고 나니 조금씩 나로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낙오 없이 다 같이 한 자 한 자 다 말하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은 엄청나다. 말하기대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연습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 나를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몸짓과 눈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서로가 서로여서 주고받은 따뜻함이 꿈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나인 것처럼 당신이 당신이 되어줄 수 있게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기대회를 하면서 받은 수많은 목적 없는 호의와 위로와 공감과 응원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하다. 내 첫 말하기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의 마음을 간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며 사는 내가 되고 싶다.



3

성폭력과 사람들

열린터에서 생활하게 될 성폭력생존자에게 보내는 편지

사례연구

성폭력피해자와 대리인 상담

열린터에서 생활하게 될 성폭력생존자에게 보내는 편지

명아

〈이 글은 2014년 10월 16일 열린터 개소 20주년 기념식을 맞아 열린터 생활인이었던 명아가 축하의 뜻을 담아 보내온 편지입니다. 열린터에서 먼저 생활한 경험을 가진 앞 선 경험자로 열린터에서 생활하게 될 성폭력생존자에게 보내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반성폭력지에 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난 열린터는
언제나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채 소통되지 않던 나에게
나 자신을 돌보고 나와 타인이 연결되고 나와 세상이 연결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내가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울고 웃으며 일상을 나누고
가족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귀한 경험도 처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같이 느껴졌던 것은

함께 지낸 열린터 식구들의 에너지와 웃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런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즐기치게 활발한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나를 지원하는 열린터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지내자’라는 진심 어린 말을 믿고
열린터에서 사는 동안 내가 살 곳을 찾고,
내 일을 찾아 이제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열린터를 떠나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열린터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또 다시 믿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내가 살아온 열린터라는 동지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열린터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보살피고 아낄 수 있는 힘을 얻은 나는
이곳 열린터를 떠나 그토록 원하던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는 생활을 위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언젠가 열린터 식구들과 같이 재밌게 본
뮤지컬에 나왔던 ‘중력을 벗어나’라는 노래처럼
나는 이제 열린터에서 받은
많은 것들의 중력에서 벗어나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힘을 찾으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성폭력피해자와 대리인 상담

임유영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前 활동가

여전히 세상에는 예전의 나와 같이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려
외면하고 숨긴 채 살아가거나,
이미 끊어져버렸다고 느끼는 자신의 삶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열림터 지원자들의 노력이
세상의 보편적인 기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폭력의 구속에서 벗어나
세상과 직면해 살아갈 수 있기를,
자신을 움아매고 있는 지겨운 중력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자신의 인생 모두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소는 지난 2012년 상담통계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사례에서 가족 친인척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전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전년도에 비해 17.2% 증가한 37.2%) 현상을 살펴보았다. 같은 통계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변인들과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피해자의 치유보다 대리인의 판단과 역할이 우선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굵직한 연쇄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미디어가 이러한 사건들을 전례 없이 세부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높아지는 듯 보였다. 정부가 2012년 '4대약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핵심국정과제에 성폭력 근절을 포함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대상의 폭을 확장시키는 효과 또한 만들어졌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여성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호주의는

성폭력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우려된다.

이번 호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리인 상담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인인 데이트 상대나 아내의 성폭력을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대리인 내담자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이거 성폭력이예요, 아니예요?”

한 성폭력피해자의 데이트 상대라는 남성 내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상담자에게 이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며 네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왜 그것이 궁금하냐는 상담자의 질문에 내담자는 고소를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단정적인 답을 주기 어려웠다.

먼저 이 사건의 피해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처벌이 어려웠다. 따라서 상담자는 성폭력의 형사적 해결 이외의 개인적 대응 방법, 다른 제도의 이용 등을 안내하였다. 더불어 내담자인 남성이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조력을 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본인의 판단으로 고소하려는 것인지 누차 질문하였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이 과정은 대리인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조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피해자의 상황이나 사건 해결의 의사를 내담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특별법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시행되면서,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성폭력 사건이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더욱 대리인인 내담자의 행동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기대되는 역할을 조언해야 한다.

소유의 대상, 보호의 대상?

두 번째 사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내담자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있던 도중 가해자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는 점, 가해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가해자의 차 안이라는 점을 들며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내담자의 말을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폭력 피해상황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 몸에 상처를 입었고, 탈출에 성공하자마자 길가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즉각 경찰에 고소하였다. 내담자는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였다. 내담자의 말을 빌리자면 “비록 아내가 더럽혀” 졌더라도 본인은 자신보다 괴로울 아내를 위해 “인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내담자는 고소만 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고소를 취하한 아내가 의심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행동은 결국 내담자 자신의 “인내”를 배반하는 행동이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 사례의 내담자가 피해자의 배반에 대해서만 호소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애초 자신의 아내를 성폭력 피해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가해남성을 찾아가 흠씬 때려주고 싶지만 법의 제약으로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책과 안타까움을 함께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질타, 남편인 내담자 자신이 아내의 보호자라는 자의식, 가해남성에 대한 응징의 욕구는 모두 한 가지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아내의 ‘정절’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침해당했다는 사실이다.

누구의 시선으로 성폭력을 바라볼 것인가

한 사건에 있어 ‘이것이 성폭력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중요해진다면, 이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단정적으로 피해여부를 ‘선언’하거나 ‘진단’ 내리기 위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호명하고, 이를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흔히 오해되듯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의미와 책임을 짊어진다는 태도로서의 피해자중심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많은 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은, 성폭력이라는 비일상적인 한 사건을 맞닥뜨려 흔들린 자신의 원칙과 관점, 통념을 재점검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나간다. 대리인 혹은 조력자의 역할은, 이렇게 세계(사회)와 나(개인)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새로이 만들어가는 싸움을 해나가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역할을 모두 대신 해주는 태도에 있지 않다. 심지어 그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생각보다 적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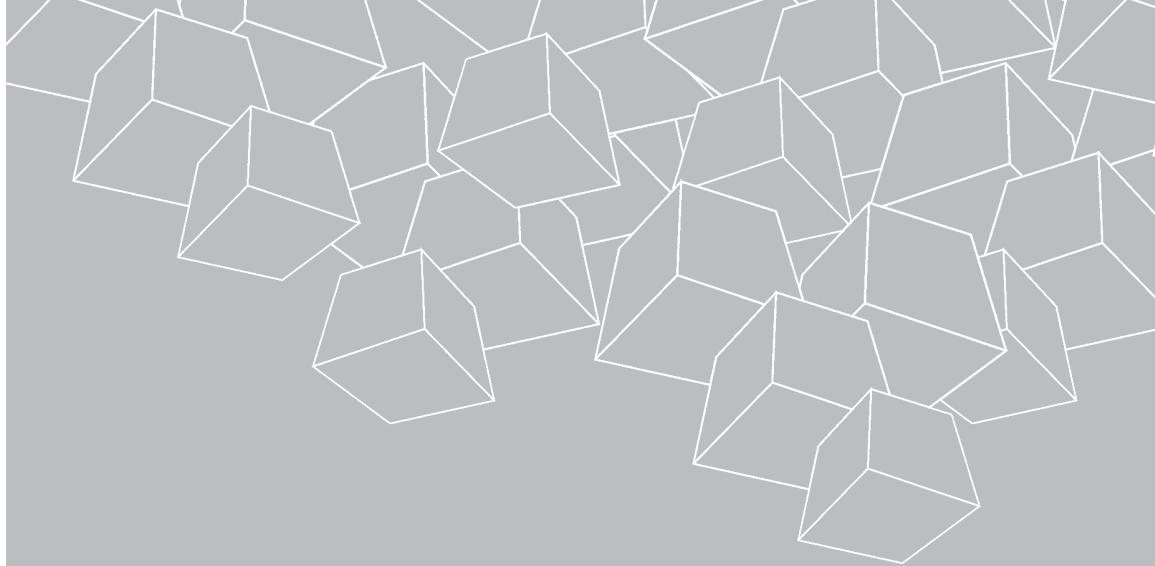
첫 번째 사례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러한 설명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것을 오랜 시간 권하였지만, 상담자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일부도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내담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내담자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몇 군데 기관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은 뒤 피해당사자가 직접 상담소로 전화를 걸어왔다. 역시

격앙된 목소리의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비난과 의심이 사랑이 아님을 확신한다며,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지만 본인은 이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나가며

앞서 소개한 두 사례는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성폭력의 위협 속에 잠재적 피해자로서 여성을 위치시키고, 특정한 성별적 태도를 강요·강화하는 것이 과연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길일지, 멈춰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성을 향한 오래되고 익숙한 위협의 냄새가 피어오른다.



4

권말코너
날말퍼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가로
연쇠

- 2014년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들어 정신 병리 현상인 이 상태였다고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최근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이에 의해 입게 되는 경멸이나 모욕을 담은 눈짓이나 욕설, 외모비하 같은 언어적 괴롭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촬영, 성기노출, 쫓아오기 등의 피해를 이것으로 명명하여 문제제기하고 있다.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차례나 방법을 뜻하는 말로, 성폭력피해자가 이 절차상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을 몸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사건들을 계기로, 이것 특례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00운동단체이다.
-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린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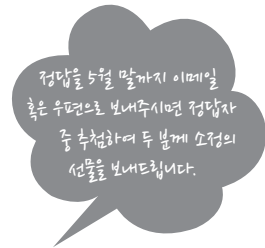
세로
연쇠

-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년 1월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산업의 확장을 방관하고 여성인권상황을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법의 이름. 2014년 이 법이 시행된지 10주년이 되었다.
- 학생 성폭력피해자가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0000을 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하는 내담자는 본인은 000이 많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에서 2014년도 번역, 출판한 책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아동성범죄자들을 면담하고 아동 성 학대를 둘러싼 통념과 오해 속 진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 성폭력피해자는 법률조력이 필요한 경우, 000000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름.
- 범죄피해 이후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등의 부정적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반성폭력〉 9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1									11
		2			9				
		7					10		
									12
				3					
4			8						
			5				6		

〈반성폭력 8호〉 정답을 맞춘 두 분(kjs00k73님, salangheizi님)께는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 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답은 6월 1일 상담소 트위터 (@stoprape)를 통해 공개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정원, 강정원, 김가영, 김경희, 김동열, 김민경, 김성진, 김수환, 김안나, 김요한, 김원우, 김은희, 김정식, 김지혜, 김진숙, 김혜윤, 류다정, 문재연, 민준기, 민중기, 박해진, 배옥자, 백경훈, 성희령, 신하나, 안은정, 안선민, 이연아, 이해원, 장정연, 정필교, 주현지, 탁수경, 허승, 홍아현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후원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경인, 강경화,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숙, 강미연, 강민희, 강버들,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순, 강영인, 강영화, 강인화, 강정원, 강정원, 강정희, 강지이, 강푸른, 강현구, 강현주, 강희진, 계경문, 고경자,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장남, 고정삼, 고진, 고혜경, 고효주, 고희정, 공춘옥, 광경화,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구민지, 구민희, 구본준, 권구홍, 권기욱, 권갑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샘이, 권소영, 권은숙,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남형, 김남현, 김다미, 김다운, 김다현, 김대숙, 김도홍, 김동래, 김동명,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숙, 김명숙, 김문빈, 김문찬, 김미경, 김미라, 김미량,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주, 김민경, 김민규,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삿별, 김석재, 김선경, 김선미, 김선이, 김선에, 김선에,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주, 김세훈,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수환, 김순자, 김아람, 김아름, 김아리, 김안나,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우혁, 김원식, 김원정, 김유민,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은진,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림,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연, 김정혜, 김종수, 김종웅, 김종희, 김주영,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옥, 김진영, 김차연, 김채주, 김탁환, 김태실, 김태연, 김택진, 김하나, 김하정, 김학실,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경, 김형숙, 김혜경, 김혜경, 김혜련, 김혜민,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겸,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김희창, 나경미, 나미나, 나선영, 나유미, 나윤경, 나선선, 나재은, 남길식, 남문희, 남민영, 남영미, 남인숙,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더트리그룹(주), 도병옥, 도상금, 등건효,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숙영, 문성훈, 문수연, 문지영, 문지영, 문효진, 문희영, 미씨유업, 민정원, 민준기, 박경훈, 박다위, 박덕업, 박명숙, 박명식,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부진, 박상규, 박상욱, 박상희, 박상희, 박서일, 박선숙,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민,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수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수,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 박인기, 박인필,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준선, 박중주,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지나, 박지아,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희, 박현희, 박혜진, 박혜진, 박효정, 박희연, 박희주, 방기연, 방은재, 방이슬, 배경, 배영자, 배은경, 배자하, 배정원, 배정철, 백명숙, 백미순, 백선국,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인에, 백지선, 백현, 백혜랑, 번계희, 번순임, 번은미, 상목스님, 서권일, 서권일,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범원, 서순진, 서울로얄로타리클럽, 서예민, 서용완, 서운숙, 서정에, 서정연, 서정표, 서정희, 서지은, 서재자, 서해인, 서화숙,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성나리, 성지은, 소희, 손경이, 손동희, 손명규,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홍성,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요선, 송원규,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호균, 숲, 송명석, 신경우, 신경혜, 신고운, 신동현,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용, 신원제,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필, 신홍훈, 신지영, 신지혜, 심소영, 심수희, 심지현, 심진희,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은정, 안재훈, 안정미,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조룡, 안태희, 안하영, 안현용, 안효선, 안효진, 안홍자, 양동홍, 양무현,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정은, 양진선,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미근, 오선곤, 오선호, 오승환, 오세희, 오수연, 오숙희,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재형, 오정진, 오정희, 오주연, 오지원,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정희, 우준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승경, 원창연, 원형섭, 유결,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영,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숙조, 유여원, 유예리, 유정연, 유정호, 유지혜, 유하, 유혜숙, 유현미, 유환숙, 윤나래, 윤법식, 윤소정, 윤소희,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영훈, 윤용미, 윤자영, 윤정희, 윤종관, 윤종옥, 윤지원, 윤지원, 윤희영, 윤선화, 이건정, 이경미, 이경미, 이경선, 이경숙,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갑명란, 이금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다운, 이다정, 이동규, 이동숙, 이동원, 이동현, 이동화, 이명숙, 이명숙, 이명신,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민정, 이민휘, 이병래, 이병주, 이보라, 이보윤, 이복희, 이부덕, 이사랑,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상재, 이상준, 이상룡, 이서지, 이선영, 이성수, 이성이, 이성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송이, 이수안, 이수연, 이수용, 이수진, 이승구, 이승선, 이승숙, 이승자, 이승진, 이시현, 이안,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택, 이용창, 이예지, 이옥영, 이원경, 이원혜, 이원홍, 이우정, 이우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옥,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임혜경, 이재순, 이재원, 이정미, 이정복,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하, 이정희,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종희, 이준범, 이준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창원, 이태숙, 이태호, 이태호, 이한종태, 이혜사랑, 이향심, 이향화, 이현숙,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혜일, 이혜정,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희경, 이희숙, 이희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승영, 임승환, 임유영, 임유정, 임자영, 임주현, 임주희, 임지숙, 임지선, 임지선, 임홍섭,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정,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인종, 장재운, 장정희, 장정희, 장혁일, 장혜란, 장효정, 전동일,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승기,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미, 전유경, 전은유, 전정숙, 전정현, 전지현, 전해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아,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구민, 정귀원, 정구리, 정다미, 정다희,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병훈, 정보람, 정부련, 정설희, 정세원, 정소린, 정수연, 정수연, 정숙경, 정슬아, 정영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식, 정윤경, 정은선, 정은숙, 정은희, 정인호,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현,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혜랑, 정현, 정현희, 정혜윤,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소연, 조순경, 조영선, 조윤경, 조은샘, 조은숙,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실, 조인숙,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종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아, 조혜민, 조희경, 존타클럽,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혜명,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숙, 지현우, 진세록, 진태란, 차성안, 차인숙, 차현영, 채승희, 채우리, 채원숙, 천정환, 최강원, 최경식, 최광택, 최광식, 최대연, 최대용, 최동석, 최만, 최미선,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아, 최성옥, 최성화,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승연, 최시연, 최신혜, 최아람, 최연순, 최영숙, 최영애, 최영지, 최유경, 최왕열, 최용득, 최용범, 최용환, 최원일,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숙, 최윤정, 최윤정, 최은석, 최은영,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은, 최정임, 최정희, 최지나, 최지너, 최지영, 최진경,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추주형, 추혜인, 코니, 클럽미즈9 라미제이원, 편경자,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한국아마자카마작(주), 한경아, 한계영,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석구,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영규, 한영미, 한진부녀회, 한지숙, 한채운, 한희정, 함정진,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승, 허은주, 하이화, 허영진, 허정익, 허준석, 허현, 허효정, 현정순, 혜장스님, 홍광용, 홍남영, 홍만희, 홍보영, 홍상희, 홍성기, 홍성기,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보선경, 황선유, 황성기, 황성민, 황숙희, 황순경, 황유나, 황은순, 황재호, 황정민,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황희창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린터, 울림을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장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수, 권진구, 권원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선영, 김소연, 김옥란, 김재련, 김경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희영, 김효선, 김희숙, 김희정,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킷,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인필,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정, 안백린,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효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성순,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우미, 이우미, 이우정, 이혜사랑, 이희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성자, 정문중(후 요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신혜,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천수민,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콤,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순아

〈반성폭력〉은 이번호로 마무리하고,

부설 연구소 울림의 〈반성폭력 이슈리포트〉가 하반기부터 발간될 예정입니다.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담론과 정책방향을 담은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를 기대해주세요!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이미경

만든이 _ 최란

디자인 _ 디자인이즈

펴낸날 _ 2015년 4월 20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1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